

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11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안산시, 화성군, 시흥시, 수원시, 군포시의 5개 시·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월도시 계획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
- 반월도시계획구역을 각 행정구역별로 구역 및 명칭변경계획에 따라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골자

- 현행조례에서는
 - 조례명 :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
 - 심의구역 : 반월도시계획구역(안산시, 시흥시, 화성군, 군포시, 수원시 일부지역 356.407㎢)
 - 위원구성 : 해당시군, 관계공무원 및 의회의원, 해당 시·군의 추천한 위원중에서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

○ 앞으로는

- 조례명 :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- 심의구역 : 안산시도시계획구역(105.084km^2)
- 의원구성 : 안산시 의회의원 및 공무원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

□ 참고사항

-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 따른 안산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 : '96. 6. 28(원안자문)
- 반월도시계획(구역 및 명칭) 변경결정신청 : '96. 7. 8 (경기도)
- 입법예고 : '96. 9. 28 ~ 9. 18(의견없음)
- 반월도시계획(구역 및 명칭) 변경결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: '96. 11. 1(심의의결)
- 반월도시계획구역 면적 : 356.407km^2
 - 분리
 - 안산도시계획구역 : 105.084km^2
 - 시흥도시계획구역 : 125.579km^2
 - 폐송도시계획구역 : 98.530km^2
 - 수원도시계획구역 : 7.834km^2
 - 군포도시계획구역 : 15.380km^2

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 1 조 (목적) 안산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.
단,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3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.

1. 시장이 임안한 도시계획안의 자문
2.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
3. 기타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자문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지하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위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,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을 본다.

제 6 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.부등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7 조 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, 서무에 종사한다.

제 8 조 (자료제출 요구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제 9 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

제 10조 (수당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조 (운영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